



2019년 상반기
연구비 종료감사
주요 지적사례

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

<2019년 상반기 연구비 종료감사개요>

- ▶ 추진근거 : 2019년도 연구비 감사 실시 계획(산학협력단-3631호, 2019. 3. 13)
- ▶ 감사기간 : 2019. 3. 1 ~ 2019. 8. 30(6개월)
- ▶ 감사대상 :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산업진흥원 종료(예정) 과제
- ▶ 감사기관 :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감사팀

종료감사주요지적사례

연구장비·재료비

▶ 연구기자재 구입 관련 서류 누락에 관한 사항

- 연구비로 구입하는 물품(기자재, 비품)의 검수 관련 서류 및 자산 등재 처리 누락

▶ 정당 처리기준

-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**50만원 이상**의 연구기자재와 비품을 구입한 경우 「기부채납의뢰서」를 작성하여 연구비 정산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, 본교의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함
- 학술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, 용역, 공사는 구매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함
 - ▶ 구매결의서, 산출기초조사서, 견적서(타 견적서 포함), 물품검사조서, 사진, 기부채납의뢰서

▶ 관련 근거

-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
-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업무 처리 절차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활동비(전문가활용비)

▶ 자문료 집행 시 특정인에게 계속적 집행에 관한 사항

- 연구과제 기간 동안 1인에게 정기적 · 반복적인 자문료 집행

▶ 정당 처리기준

- 참여연구원이 아닌 외부 1인에 대하여 정기적인 자문료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주관 연구기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동 전문가에 대한 **계약 행위 등을 실시**하고 동 연구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처리해야 한다.
- ▶ 연구과제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제외 및 전문가활용비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은 불인정

▶ 관련 근거
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re.kr) 사업안내-질의응답 게시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』 제2장 연구비 사용, 연구활동비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활동비(전문가활용비)

▶ 자문용역 계약 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에 관한 사항

- 자문용역 계약업체를 연구책임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업체로 지정 및 계약

▶ 정당 처리기준

- **연구기관 내부**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간 상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집행 불인정
(다만, 단독판매처,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)

▶ 관련 근거
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re.kr) 사업안내-질의응답 게시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』 제2장 연구비 사용, 연구활동비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활동비(전문가활용비)

▶ 최종 연구계획서에 전문가활용내역(예산) 미계상에 관한 사항

- 지원기관에 최종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에 전문가활용내역(예산) 관련 내용 미계상

▶ 정당 처리기준

- 전문가활용(원고료, 자문료, 강사료 등)을 계획하고 있다면 **연구계획서에 전문가활용에 대한 내역 계상**
- 최종 연구계획서에 관련 내역이 없다면 예산 변경을 통해 관련 사항 반영
(전문가활용비 집행기준 「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」 참조)

▶ 관련 근거
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re.kr) 사업안내-질의응답 게시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』 제2장 연구비 사용, 연구활동비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활동비(국외여비)

▶ 국외 출장 이행 후 증빙자료 미비에 관한 사항

- 국외 출장 승인 공문, 출입국 확인 서류(여권사본 등), 출장 이행 후 귀국보고서 사후 증빙 누락

▶ 정당 처리기준

-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소속기관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.
- 국외여비를 사전에 지급받은 경우, **귀국 후 즉시** 탑승권,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의 출장증빙자료,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▶ 연구책임자의 경우 교무과에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 가능함

▶ 관련 근거
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』 제2장 연구비 사용, 연구활동비, 정산시 제출서류
- 『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』 비목별 산정기준 1. 국외여비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과제추진비(회의비)

▶ 연구와 무관한 개인 편익 목적으로 사용

- 회의비 집행시 해당 금액 개인명의로 된 회원의 포인트 적립

▶ 정당 처리기준

- 연구개발비를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여 진행한 경우에 카드에서 발생하는 **포인트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어서는 불인정된다.**

- ▶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적 관리 및 합리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인정

▶ 관련 근거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(연구개발비의 사용)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re.kr) 사업안내-질의응답 게시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과제추진비(식대)

- ▶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식대를 원거리 장소에서 집행
 - 참여연구원의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 집행시 학교 근처가 아닌 원거리 장소에서 집행

▶ 정당 처리기준

-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 및 특근식대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야근 시 **학교 근처 식당에서 식사 전 및 후 야근**을 실시하는 것임
 - ▶ 회의비와 식대 구분 사용
 - 회의비(외부기관 참석자 포함), 식대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

▶ 관련 근거
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re.kr) 사업안내-질의응답 게시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과제추진비(국내여비 및 회의비)

▶ 국내여비 중 식대를 지급받고 동일 일자 회의비 집행

- 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 비를 지급받고 동일 일자에 회의비 식대를 사용

▶ 정당 처리기준

- 학회 참석 또는 출장지에서 숙식을 제공 받은 경우 숙박 또는 식비를 감액(제외)하여 여비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시 **이중적인 사항(중복 집행)**은 모두 불인정됨

▶ 관련 근거
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re.kr) 사업안내-질의응답 게시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』 제2장 연구비 사용, 연구과제추진비

종료감사 주요 지적 사례

연구수당

- ▶ 연구수당 집행시 기여도평가서에 일부 연구원 누락 및 평가증빙 미비에 관한 사항
 - 전체연구원 기여도 평가표에 일부 참여연구원 누락, 기여도 평가결과 증빙 미비

▶ 정당 처리기준

-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수당 지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연구원별로 계좌이체
-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신청 시, **전체 참여연구원에** 대한 과제 기여도, 당해 과제 참여율,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한 근거자료 및 연구수당 지급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▶ 관련 근거
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』 제2장 연구비 사용, 연구수당, 정산 시 제출서류
- 『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』 비목별 산정기준, 직접비/연구수당